

**화장품 심사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의 수납, 지출 및 보관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보건부 공고**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징수된 금액을 식품의약품청이 사용하는 데 있어 그 기준, 방법 및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기 2565년(서기 2022년) 화장품법(제2호)로 개정된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의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21조 제3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공고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본 공고와 상충 또는 배치되는 기준의 공고, 기준 또는 지침은 본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식품의약품청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 (1) 국내외 전문가, 전문가 조직,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등록 수수료
- (2)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이와 관련하여, 보건부 소속기관 중 식품의약품청의 권한과 임무를 위임 받은 기관은 상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제3조에 따른 금액의 징수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한다.

- (1) 현금, 수표 또는 환어음
- (2) 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납부
- (3) 전자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 (4)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청장이 정하는 기타 방법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수 방법은 재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식품의약품청 또는 그 권한과 임무를 위임 받은 보건부 소속기관은 납부자에게 매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공식 정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의약품청 또는 그 권한과 임무를 위임 받은 보건부 소속기관은 제3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재무부 예금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명칭은 "화장품 심사 운영 수입 계좌", 예금계좌 코드 XX862, 계좌 유형 0700으로 한다.

제7조 제3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식품의약품청 또는 그 권한과 임무를 위임 받은 보건부 소속기관의 공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학술 자료 평가, 시험·분석, 사업장 점검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 전문가 조직,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대한 보수

(2) 화장품 분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3) 화장품 심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 비용

(4) 화장품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관련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용

(4.1) 화장품 심사 절차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 및,

화장품 심사 절차 이후의 사후 관리와 관련된 보수

(4.2)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3)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보수

(4.4) 사무용 건물의 수선,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

(4.5) 비품, 토지, 건축물 및 차량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

제8조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액의 수납, 인출, 지출, 보관, 국고 예치 또는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공고, 규칙, 명령 또는 정부의 행정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9조 조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절차는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 규정 및 공고에 따른다.

제10조 채무 부담의 승인 권한은 관계 법령, 규정 및 정부 공고에 따라 행사한다.

제11조 회계 처리에 관한 절차는 정부 회계 기준 및 정부 회계 정책에 따라 국가기관 회계 계정에 통합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재무부가 정한 기준 및 원칙에 따라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식품의약품청 또는 그 권한과 임무를 위임 받은 보건부 소속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액의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지출 보고서의 형식은 재정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본 공고에 규정된 사항과 달리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건부 장관은 본 공고의 집행 책임자로 하며, 본 공고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025년 10월 7일 공고

파타나 프럼팟

보건부 장관